

<제8의3호> <개정 2013.10.31><개정 2015.10.22>

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정사유 발생내역을 보고합니다.

1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:

- 아이온 아테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
- 아이온 테미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
- 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
- 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
- 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
- 아이온 제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
- 아이온 머큐리 SN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

2. 보고일(사유 발생일) : 2020년 01월 16일(2019년 11월 12일)

3. 집합투자업자 명칭 : 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

붙 임 :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

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



작 성 자 : 이 경훈 (부장)

전화번호 : 02-6927-0158

(붙임)

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

집합투자 기구 명칭	집합투 자기구 코드	보고 항목	보고내용 발생일	보고내용	보고사유 (원인)	처리방안
아이온 아테나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3호	001461 6C0051	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부실 자산 이 발생한 경우	2019-11- 12	아래참조*	아래참조*	-
아이온 데미스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	001461 6C0056					-
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 탁 제1호	001461 6C0061					-
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 탁 제2호	001461 6C0064					-
아이온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 탁 제3호	001461 6C0068					-
아이온 제우스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3호	001461 6C0111					-
아이온 머큐리 SN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	001461 6C0118					-

***보고내용**

[보고대상 집합투자재산]

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: ㈜리드,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

보유수량 : 총 권면액 2,000,000,000원

평가금액(상각이전의 평가금액) : 2,020,054,945원(원금 2,000,000,000원 및 이자 20,054,945원)

상각금액(해당 상각금액) : 1,010,000,000원

상각률(상각금액/평가금액 * 100) : 50%

부실사유 : 채무이행자금부족으로 인한 원리금 미지급

부실단계 : 부실우려단계

[집합투자기구별 현황]

집합투자 기구 명칭	권면액	이자	합계	상각액	상각후 잔액
아이온 아테 나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 신탁 제3호	400,000,000	4,010,989	404,010,989	202,000,000	202,010,989
아이온 테미 스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 신탁 제1호	600,000,000	6,016,485	606,016,485	303,000,000	303,016,485
아이온 코스 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	400,000,000	4,010,989	404,010,989	202,000,000	202,010,989
아이온 코스 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	200,000,000	2,005,494	202,005,494	101,000,000	101,005,494
아이온 코스 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	200,000,000	2,005,494	202,005,494	101,000,000	101,005,494
아이온 제 우스 전문 투자형 사 모투자신탁 제3호	100,000,000	1,002,747	101,002,747	50,500,000	50,502,747
아이온 머큐 리 SNI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 호	100,000,000	1,002,747	101,002,747	50,500,000	50,502,747
합계	2,000,000,000	20,054,945	2,020,054,945	1,010,000,000	1,010,054,945

기제상의 주의

1.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2.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8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.
 - 제1호의 경우 : 한도를 초과한 비율
 - 제2호의 경우 :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, 보유수량, 평가금액(상각이전의 평가금액), 상각금액(해당 상각금액), 상각률(상각금액/평가금액 * 100), 부실사유(발행인의 부도, 화의신청,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, 파산절차진행), 부실단계(부실우려단계, 발생단계, 개선단계, 악화단계)
 - 제3호의 경우 :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
3. 보고사유(원인)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8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.
4.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8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